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윤영희, 장규권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6월 9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학교폭력 범위를 넓혀 피해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폭넓게 보호하고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 수립·추진을 위하여 '학교폭력대책지역협 의회'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여 금천구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구청장과 구민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책무, 학교폭력 신고 책무를 규정함
 (안 제3조 내지 제5조).

-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구청장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다방면으로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-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예방 대책의 마련을 위해 기관 간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직무 등을 규정함
 (안 제9조 내지 15조).
- 학교폭력예방치료센터의 위탁 설치 및 운영,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.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그에 따른 자료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 함(안 제18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 본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되어온 조례에서 미비점과 추가 사항을 신설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규정을 재정립하여 금천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조성을 위해 의원 발의되었음.

2) 주요내용

-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구청장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다방면으로 수립·시행할 수

있도록 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함(안 제7조).

○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
다. 검토의견

 본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